KB 다이렉트금쪽같은 펫보험(강아지)(무배당)(24.10) 약관

★ KB 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그린 <GREEN 지구 캠페인> KB손해보험과 고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내일! 종이약관 대신 모바일약관으로 시작하세요.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특별약관

제2장 반려동물 관련 특별약관

KB 다이렉트 금쪽같은 펫보험(강아지)(무배당)(24.10) 약관



제2장 반려동물 관련 특별약관

반려동물(강아지) 일반조항

제1조(목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0 0	T O		
용 어	정 의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피보험자	반려동물의 소유와 관련하여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반려동물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을 말하며, 이 계약에서 가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고 있는 개(犬)를 말합니다. 다만 아래에 기재된 개(犬)는 이 보험의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보험가입 당시의 연령이 생후 60일 이하 또는 만 10세 (120 개월)을 초과하는 개(犬) 2. 판매점, 브리더 등이 매매(賣買)를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개(犬) 3. 경찰견, 구조견, 군견, 사냥개 등 특수한 목적의 개 (犬)(단, 맹도견, 청도견 등 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4. 투견, 경주견 등 흥행을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개(犬) 5. 유기동물 보호센터 등에서 사육관리하는 개(犬)		

2. 지급사유 및 보상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반려동물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유독 가스 또는 유독 물질을 반려동물이 우연히 일시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음식물 섭취로인한 증상,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병	상해를 제외한 상병을 모두 포함합니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 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 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부 가 설 명 음식물

반려동물이 일상 생활 중 보호자 또는 생산자의 의도와 상관 없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이 원료와 가공품 및 부산물(뼈, 과일 씨 등 폐기 대상물질)을 말하며, 사람 및 다른 동물의 식이로 활용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음식물의 상태(부패, 감염 여부 등)와 상관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약 이름[반려동물의료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반려동물의료비의 보장개시일(이하 반려동물의료비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이하 사고라 합니다)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일당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에 사용된비용(각종 할인 및 감면, 사후환급금액 등을 제외한 실수납액을 의미합니다. 이하의료비라 합니다)을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이하의료비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회사가 지급하는 연간의료비보험금의 총합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의료비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후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당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자기부담금은 1일당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1일당 보	연간 총	
구분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수술을 한 날의 경우	보상한도액
실속형	1일당 10만원 한도	1일당 150만원 한도	1,000만원
기본형	1일당 15만원 한도	1일당 200만원 한도	1,000만원
고급형	1일당 30만원 한도	1일당 250만원 한도	2,000만원

예 시 의료비보험금의 계산

[의료HI보험금 산출방식]

{(피보험자가 부담한 1일당 의료비 - 1일당 자기부담금) X 보상비율}과 1일당 보상한도액 중 적은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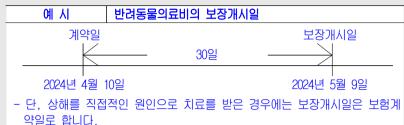
[의료비보험금 지급금액 예시]

·보상비율 90%, 자기부담금 1만원, 기본형 가입 기준

예시①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 · 피보험자가 부담한 당일 의료비 : 30만원
- ·지급금액 = {(30만원 1만원) x 90%, 15만원} 중 적은 금액 = 15만원 예시② 수술을 한 날의 경우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 당일 의료비 : 221만원
 - ·지급금액 = {(221만원 1만원) x 90%, 200만원} 중 적은 금액 = 198만원
- ③ 반려동물이 제1항의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 부터 180일 이내의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의 치료인 경우에 한합니다.

④ 제1항의 경우 반려동물의료비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 [5]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도성 특별약관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반려동물의료비보장개시일은 이 특 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4.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 7.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8.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9.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11.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부 가 설 명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2 회사는 아래의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장개시일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2.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아래의 질병

- · 개 : 파보바이러스감염증,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감염 증, 전염성 간염, 아데노바이러스2형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 렙토스피라감염증, 필라리아감염증, 광견병, 인플루엔자 감염, 켄넬코프
- 3.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4.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5. 대상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교배,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6.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7. 미용으로 인한 비용
- 8.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9.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 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 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 10.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 방약, 의약부외품 등)
- 11.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및 재활치료
- 12.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샹품 값 포함) 및 귀세정제(이어클리너), 예방 가능한 기생충(벼룩, 젝켄, 모공충 등)의 제거비용 및 기생충으로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
- 13.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4. 왕진료,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5.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16.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 17.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18. 아포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Janus kinase inhibitor) 약물과 사이

토포인트(Cytopoint)

- 19. 첩모난생(속눈썹 질환) 및 눈물샘 치료(누루관시술 등) 등의 안검 외·내반 및 비루관 관련 질환으로 인한 비용
- ③ 제2항에서 정한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조치(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가입동물인 개에 대하여 아래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
 - 2. 치석제거 및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 치료비용, 구강내 질환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동물병원의 수의사 자격을 가진 자(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상해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수의사법 제17조(개설)에서 규정한 국내의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개,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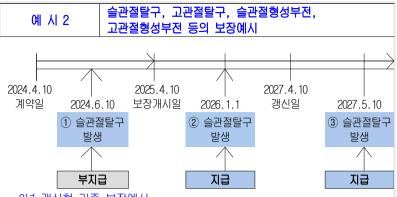
- 1. 흡인(吸引)
-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 3.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4.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특약 이름[<u>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슬관절/고관절</u> 탈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 회사는 「1. 반려동물의료비(강아지) 【갱신계약】 특별약관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4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슬관절/고관절 탈구의 보장개시일(이하 슬관절/고관절탈구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반려동물의료비를 「1. 반려동물의료비(강아지)【갱신계약】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슬관절/고관절탈구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 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 · 3년 갱신형 기준 보장에서
 - ①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미지급
 - ②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 ③ 갱신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도성 특별약관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슬관절/고관절탈구 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4.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 7.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과리에 대한 태만
 - 8.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 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9.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 태
 - 11.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부가설명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2 회사는 아래의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장개시일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2.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아래의 질병

- · 개 : 파보바이러스감염증,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감염 증, 전염성 간염, 아데노바이러스2형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 렙토스피라감염증, 필라리아감염증, 광견병, 인플루엔자 감염, 케넬코프
- 3.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4.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5. 대상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교배,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6.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7. 미용으로 인한 비용
- 8.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9.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 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 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 10.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 방약, 의약부외품 등)
- 11.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및 재활치료
- 12.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샹품 값 포함) 및 귀세정제(이어클리너), 예방 가능한 기생충(벼룩, 젝켄, 모공충 등)의 제거비용 및 기생충으로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
- 13.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4. 왕진료,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5.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16.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 17.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18. 아포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Janus kinase inhibitor) 약물과 사이 토포인트(Cytopoint)
- 19. 첩모난생(속눈썹 질환) 및 눈물샘 치료(누루관시술 등) 등의 안검 외·내반 및 비루관 관련 질환으로 인한 비용
- ③ 제2항에서 정한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조치(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가입동물인 개에 대하여 아래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치석제거 및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 치료비용. 구강내 질환

특약 이름 [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치과/구강질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1. 반려동물의료비(강아지) 【갱신계약】 특별약관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4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이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치과/구강질환의 보장개시일(이하 치과/구강질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치과질환(치석제거 및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 치료 포함) 또는 구강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반려동물의료비를 「1. 반려동물의료비(강아지)【갱신계약】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치과/구강질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도성 특별약관 -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치과/구강질환 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1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4.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 7.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8.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 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9.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11.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부 가 설 명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2 회사는 아래의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장개시일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2.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아래의 질병

- · 개: 파보바이러스감염증,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감염 증, 전염성 간염, 아데노바이러스2형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 렙토스피라감염증, 필라리아감염증, 광견병, 인플루엔자 감염, 켄넬코프
- 3.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4.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5. 대상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교배,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6.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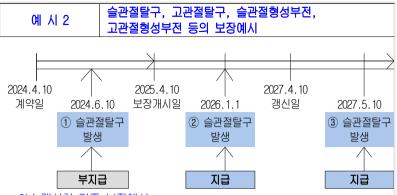
- 7. 미용으로 인한 비용
- 8.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9.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 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 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 10.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 방약, 의약부외품 등)
- 11.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및 재활치료
- 12.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샹품 값 포함) 및 귀세정제(이어클리너), 예방 가능한 기생충(벼룩, 젝켄, 모공충 등)의 제거비용 및 기생충으로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
- 13.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4. 왕진료,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5.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16.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 17.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18. 아포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Janus kinase inhibitor) 약물과 사이 토포인트(Cytopoint)
- 19. 첩모난생(속눈썹 질환) 및 눈물샘 치료(누루관시술 등) 등의 안검 외·내반 및 비루관 관련 질환으로 인한 비용
- ③ 제2항에서 정한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조치(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가입동물인 개에 대하여 아래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

특약 이름[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슬관절/고관절 탈구 및 치과/구강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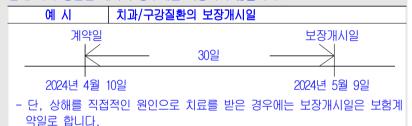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 회사는 「1. 반려동물의료비(강아지) 【갱신계약】 특별약관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슬관절/고관절 탈구의 보장개시일(이하 슬관절/고관절탈구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반려동물 의료비 또는 치과/구강질환의 보장개시일(이하 치과/구강질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치과질환(치석제거 및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치료 포함) 또는 구강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반려동물의료비를 「1. 반려동물의료비(강아지)【갱신계약】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보험수익자에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슬관절/고관절탈구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 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 · 3년 갱신형 기준 보장예시
 - ①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미지급
 - ②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 ③ 갱신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 ③ 제1항의 경우 치과/구강질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단, "제도성 특별약관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도성 특별약관 -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슬관절/고관절탈구 보장개시일은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4.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 7.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8.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9.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11.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부 가 설 명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2 회사는 아래의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장개시일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2.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아래의 질병

- · 개: 파보바이러스감염증,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감염 증, 전염성 간염, 아데노바이러스2형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 렙토스피라감염증, 필라리아감염증, 광견병, 인플루엔자 감염, 켄넬코프
- 3.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4.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5. 대상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교배,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6.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7. 미용으로 인한 비용
- 8.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9.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 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 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 10.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 방약, 의약부외품 등)
- 11.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및 재활치료
- 12.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샹품 값 포함) 및 귀세정제(이어클리너), 예방 가능한 기생충(벼룩, 젝켄, 모공충 등)의 제거비용 및 기생충으로 발생한 질병의 치

류비

- 13.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4. 왕진료,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5.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16.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 17.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18. 아포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Janus kinase inhibitor) 약물과 사이 토포인트(Cytopoint)
- 19. 첩모난생(속눈썹 질환) 및 눈물샘 치료(누루관시술 등) 등의 안검 외·내반 및 비루관 관련 질환으로 인한 비용
- ③ 제2항에서 정한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조치(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약 이름[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MRI/CT. 연간 1회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MRI/CT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MRI/CT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이하 사고라 합니다)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의사가 치료 중 자기공명영상(MRI) 또는 컴퓨터단층촬영(CT)을 시행한 경우 당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에 사용된 비용(각종 할인 및 감면, 사후환급금액 등을 제외한 실수납액을 의미합니다. 이하 의료비라 합니다)에서 반려동물의료비보험

- 금을 제외한 금액을 MRI/CT보험금으로 제3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이란 「1. 반려동물의료비(강아지)【갱신계약】 특별약관」 및 「4. 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슬관절/고관절 탈구 및 치과/구강질환)(강아지)【갱신계약】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 합계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MRI/CT보험금은 제1항의 의료비에서 제2항의 반려동물의료비보험 금을 차감한 금액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예 시 MRI/CT보험금의 계산

[MRI/CT보험금 산출방식]

{(피보험자가 부담한 당일 의료비 -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 X 보상비율}과 보 상하도액 중 적은 금액

[MRI/CT보험금 지급금액 예시]

· 보상비율 90%. 보상한도액 : 100만원 기준

(1) 人(1)

- ·MRI 시행 당일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75만원
- ·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 : 15만원
- ·지급금액 = {(75만원 15만원) x 90%, 100만원} 중 적은 금액 = 54만원 예시②
 - ·MRI 시행 당일 피부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215만원
 - ·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 : 15만원
- ·지급금액 = {(215만원 15만원) x 90%, 100만원} 중 적은 금액 = 100만원
- ④ 반려동물이 제1항의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의 치료인 경우에 한합니다.
- 5 제1항의 경우 MRI/CT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 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보험계 약일로 합니다.
- ⑥ 제3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 7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도성 특별약관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MRI/CT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3조("자기공명영상(MRI)" 및 "컴퓨터단층촬영(CT)"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자기공명영상(MRI)"이라 함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수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수의사의 관리 하에 자기공명영상(MRI)을 사용하는 촬영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컴퓨터단층촬영(CT)"이라 함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수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수의사의 관리 하에 컴퓨터단층촬영(CT)을 사용하는 촬영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 · 자기공명영상(MRI) : 강한 자기장 내에서 인체에 고주파를 전사해서 반향 되는 전자기파를 측정하는 영상진단법
- · 컴퓨터단층촬영(CT) : x선을 투과시켜 그 흡수차이를 컴퓨터로 재구성하여 신체의 단면영상을 얻거나 3차원적인 입체영상을 얻는 영상진단법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4.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 7.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8.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 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9.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11.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부 가 설 명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② 회사는 아래의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장개시일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2.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아래의 질병

- · 개 : 파보바이러스감염증,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감염 증, 전염성 간염, 아데노바이러스2형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 렙토스피라감염증, 필라리아감염증, 광견병, 인플루엔자 감염, 켄넬코프
- 3.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4.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5. 대상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교배,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6.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7. 미용으로 인한 비용
- 8.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9.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 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 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 10.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 방약, 의약부외품 등)
- 11.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및 재활치료
- 12.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샹품 값 포함) 및 귀세정제(이어클리너), 예방 가능한 기생충(벼룩, 젝켄, 모공충 등)의 제거비용 및 기생충으로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
- 13.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4. 왕진료,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5.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16.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 17.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18. 아포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Janus kinase inhibitor) 약물과 사이

토포인트(Cytopoint)

- 19. 첩모난생(속눈썹 질환) 및 눈물샘 치료(누루관시술 등) 등의 안검 외·내반 및 비루관 관련 질환으로 인한 비용
- ③ 제2항에서 정한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조치(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약 이름[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백내장/녹내장 수술, 연간 1회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백내장/녹내 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백내장/녹내장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백내장 또는 녹내장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의사가 치료 중 백내장/녹내장수술을 시행한 경우 당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에 사용된 비용(각종 할인 및 감면, 사후환급금액 등을 제외한 실수납액을 의미합니다. 이하 의료비라 합니다)에서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을 제외한 금액을 백내장/녹내장

- 수술보험금으로 제3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이란 「1. 반려동물의료비(강아지)【갱신계 약】 특별약관」 및 「4. 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슬관절/고관절 탈구 및 치과/구강질환)(강아지)【갱신계약】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 합계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백내장/녹내장수술보험금은 제1항의 의료비에서 제2항의 반려 동물의료비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이 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 립니다.

예 시 백내장/녹내장수술보험금의 계산

[백내장/녹내장수술보험금 산출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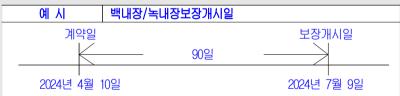
{(피보험자가 부담한 당일 의료비 -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 X 보상비율}과 보 상한도액 중 적은 금액

[백내장/녹내장수술보험금 지급금액 예시]

· 보상비율 90%. 보상한도액 : 50만원 기준

예시(1)

- · 백내장/녹내장수술 시행 당일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250만원
- ·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 : 200만원
- ·지급금액 = {(250만원 200만원) x 90%, 50만원} 중 적은 금액 = 45만원 예시(2)
 - · 백내장/녹내장수술 시행 당일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350만원
 - ·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 : 200만원
 - ·지급금액 = {(350만원 200만원) x 90%, 50만원} 중 적은 금액 = 50만원
- ④ 반려동물이 제1항의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의 치료인 경우에 한합니다.
- 5 제1항의 경우 백내장/녹내장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 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보험계 약일로 합니다.
- ⑥ 제3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 7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도성 특별약관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백내장/녹내장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3조("백내장/녹내장수술"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백내장/녹내장수술"이라 함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수의사에 의하여 백내장/녹내장으로 인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수정체 유화술, 수정체 낭내 적출술, 녹내장 수술 등의 수술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1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4.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 7.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8.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 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9.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11.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부 가 설 명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② 회사는 아래의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장개시일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2.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아래의 질병

- · 개 : 파보바이러스감염증,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감염 증, 전염성 간염, 아데노바이러스2형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 렙토스피라감염증, 필라리아감염증, 광견병, 인플루엔자 감염, 켄넬코프
- 3.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4.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5. 대상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교배,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6.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7. 미용으로 인한 비용
- 8.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9.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 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 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 10.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 방약, 의약부외품 등)
- 11.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및 재활치료
- 12.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샹품 값 포함) 및 귀세정제(이어클리너), 예방 가능한 기생충(벼룩, 젝켄, 모공충 등)의 제거비용 및 기생충으로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
- 13.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4. 왕진료,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5.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16.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 17.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18. 아포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Janus kinase inhibitor) 약물과 사이 토포인트(Cytopoint)
- 19. 첩모난생(속눈썹 질환) 및 눈물샘 치료(누루관시술 등) 등의 안검 외·내반 및 비루관 관련 질환으로 인한 비용
- ③ 제2항에서 정한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조치(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약 이름[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특정처치(이물제거), 연 간 2회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이물 섭취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의사가 치료 중 이물제거(내시경) 또는 이물제거(구토유도약물)에 해당하는 치료를 한 경우 당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에 사용된 비용(각종 할인 및 감면, 사후환급금액 등을 제외한 실수납액을의미합니다. 이하 의료비라 합니다)에서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을 제외한 금액을이물제거(내시경)보험금 또는 이물제거(구토유도약물)보험금으로 제3항에 따라보험수익자에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이물제거(내시경)과 이물제거(구토유도약물)를 동일한 날에 받은 경우 이물제거(내시경)보험금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이란 「1. 반려동물의료비(강아지)【갱신계약】 특별약관」 및 「4. 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슬관절/고관절 탈구 및 치과/구강질환)(강아지)【갱신계약】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 합계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이물제거(내시경)보험금 또는 이물제거(구토유도약물)보험금은 제1항의 의료비에서 제2항의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이물제거(내시경)보험금 지급횟수 및 이물제거(구토유도약물)보험금 지급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2회를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기준	보장한도	
이물제거(내시경)	이물제거를 목적으로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금	내시경을 받은 경우	<u> </u>	
이물제거(구토유도약물)	이물제거를 목적으로	부험가입금액의 10%	
보험금	구토유도약물을 받은 경우		

예 시 이물제거(내시경)보험금 및 이물제거(구토유도약물)보험금의 계산

[이물제거(내시경)보험금 및 이물제거(구토유도약물)보험금 산출방식] {(피보험자가 부담한 당일 의료비 -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 X 보상비율}과 보 상한도액 중 적은 금액

[이물제거(내시경)보험금 지급금액 예시]

· 보상비율 90%, 보상한도액 : 200만원 기준

예시

- · 이물제거(내시경) 시행 당일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215만원
- ·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 : 15만원
- ·지급금액 = {(215만원 15만원) x 90%, 200만원} 중 적은 금액 = 180만원

[이물제거(구토유도약물)보험금 지급금액 예시]

·보상비율 90%, 보상한도액 : 20만원 기준

에시

- · 이물제거(구토유도약물) 시행 당일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55만원
- ·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 : 15만원
- ·지급금액 = {(55만원 15만원) x 90%, 20만원} 중 적은 금액 = 20만원
- ④ 반려동물이 제1항의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의 치료인 경우에 한합니다.
- [5] 제3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3조("이물제거(내시경)" 및 "이물제거(구토유도약물)"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이물제거(내시경)"이라 함은 반려동물의 위장 등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술을 동반하지 않고 내시경 및 내시경포셉을 이용하여 비침습적으로 시행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이물제거(구토유도약물)"이라 함은 반려동물의 위장 등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술 및 내시경을 동반하지 않고 구토유발을 목 적으로 한 약물을 이용한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1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4.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 7.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8.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 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9.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11.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부 가 설 명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2 회사는 아래의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장개시일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2.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아래의 질병

- · 개: 파보바이러스감염증,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감염 증, 전염성 간염, 아데노바이러스2형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 렙토스피라감염증, 필라리아감염증, 광견병, 인플루엔자 감염, 켄넬코프
- 3.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4.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5. 대상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교배,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6.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7. 미용으로 인한 비용
- 8.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9.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 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 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 10.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 방약, 의약부외품 등)
- 11.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및 재활치료
- 12.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샹품 값 포함) 및 귀세정제(이어클리너), 예방 가능한 기생충(벼룩, 젝켄, 모공충 등)의 제거비용 및 기생충으로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
- 13.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4. 왕진료,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5.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16.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 17.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18. 아포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Janus kinase inhibitor) 약물과 사이 토포인트(Cytopoint)
- 19. 첩모난생(속눈썹 질환) 및 눈물샘 치료(누루관시술 등) 등의 안검 외·내반 및 비루관 관련 질환으로 인한 비용
- ③ 제2항에서 정한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조치(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약 이름[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특정약물치료, 연간 6회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특정약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특정약물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이하 사고라 합니다)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의사에게 특정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당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에 사용된 비용(각종 할인 및 감면, 사후환급금액 등을 제외한 실수납액을 의미합니다. 이하 의료비라 합니다)에서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을 제외한 금액을 특정약물 치료보험금으로 제3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이란 「1. 반려동물의료비(강아지)【갱신계 약】 특별약관」 및 「4. 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슬관절/고관절 탈구 및 치과/구강질환)(강아지)【갱신계약】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 합계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특정약물치료보험금은 제1항의 의료비에서 제2항의 반려동물의료 비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보험증 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연간 6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예 시 특정약물치료보험금의 계산

[특정약물치료보험금 산출방식]

{(피보험자가 부담한 당일 의료비 -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 X 보상비율}과 보 상하도액 중 적은 금액

[특정약물치료보험금 지급금액 예시]

· 보상비율 90%, 보상한도액 : 10만원 기준

예시(1)

- · 특정약물치료 시행 당일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25만원
- ·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 : 15만원
- ·지급금액 = {(25만원 15만원) x 90%, 10만원} 중 적은 금액 = 9만원 예시(2)
 - · 특정약물치료 시행 당일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55만원
 - ·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 : 15만원
 - ·지급금액 = {(55만원 15만원) x 90%, 10만원} 중 적은 금액 = 10만원
- ④ 반려동물이 제1항의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의 치료인 경우에 한합니다.
- 5 제1항의 경우 특정약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 ⑥ 제3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 7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도성 특별약관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특정약물치료보장개시일은 이 특별 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3조("특정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약물치료"라 함은 수의사가 반려동물의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아포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Janus kinase inhibitor) 약물과 사이토포인트(Cytopoint), 트릴로스탄(Trilostane), 피모벤단(Pimobendan), 크리스데살라진(Crisdesalazine)(제다큐어) 또는 경구 항암제를 사용하여 시행한 치료를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 · **아포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 사이토포인트(Cytopoint)** : 아토피 등 치료목적 성분 약물
- · 트릴로스탄(Trilostane) : 쿠싱증후군 등 치료목적 성분 약물
- · 피모벤단(Pimobendan) : 심장질환 치료목적 성분 약물
- · 크리스데살라진(Crisdesalazine)(제다큐어) : 인지기능장애 치료목적 성분 약물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4.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 7.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8.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 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9.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핵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11.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부 가 설 명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2 회사는 아래의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장개시일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2.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아래의 질병

- · 개 : 파보바이러스감염증,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감염 증, 전염성 간염, 아데노바이러스2형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 렙토스피라감염증, 필라리아감염증, 광견병, 인플루엔자 감염, 켄넬코프
- 3.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4.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5. 대상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교배,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6.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7. 미용으로 인한 비용
- 8.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9.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 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 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 10.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 방약. 의약부외품 등)
- 11.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및 재활치료
- 12.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샹품 값 포함) 및 귀세정제(이어클리너), 예방 가능한 기생충(벼룩, 젝켄, 모공충 등)의 제거비용 및 기생충으로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
- 13.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4. 왕진료,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5.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16.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 17.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18. 첩모난생(속눈썹 질환) 및 눈물샘 치료(누루관시술 등) 등의 안검 외·내반 및 비루관 관련 질환으로 인한 비용
- ③ 제2항에서 정한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조치(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약 이름[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특정재활치료, 연간 5회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특정재활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특정재활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이하 사고라 합니다)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 의사에게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당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에 사용된 비용(각종 할인 및 감면, 사후환급금액 등을 제외한 실수납액을 의미합니다. 이하 의료비라 합니다)에서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을 제외한 금액을 특정재활치료보험금으로 제3항에 따라 보험수의자에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이란 「1. 반려동물의료비(강아지)【갱신계 약】 특별약관」 및 「4. 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슬관절/고관절 탈구 및 치과/ 구강질환)(강아지)【갱신계약】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 합계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특정재활치료보험금은 제1항의 의료비에서 제2항의 반려동물의료 비보험금을 차강한 금액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보험증 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연간 5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예 시 특정재활치료보험금의 계산

[특정재활치료보험금 산출방식]

{(피보험자가 부담한 당일 의료비 -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 X 보상비율}과 보 사하도액 중 적은 금액

[특정재활치료보험금 지급금액 예시]

·보상비율 90%, 보상한도액 : 5만원 기준

側 (1)

- · 특정재활치료 시행 당일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20만원
- ·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 : 15만원
- ·지급금액 = {(20만원 15만원) x 90%, 5만원} 중 적은 금액 = 4만 5천원 예시②
 - · 특정재활치료 시행 당일 피부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55만원
 - ·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 : 15만원
 - ·지급금액 = {(55만원 15만원) x 90%, 5만원} 중 적은 금액 = 5만원
- ④ 반려동물이 제1항의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의 치료인 경우에 한합니다.
- 5 제1항의 경우 특정재활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 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보험계 약일로 합니다.
- ⑥ 제3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도성 특별약관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특정재활치료보장개시일은 이 특별 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3조("특정재활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재활치료"라 함은 수의사가 반려동물의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한 수중 러닝머신 치료, 저주파자극치료, 초음파치료, 체외충격파 또는 플라즈마 물리치료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4.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 7.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8.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 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9.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11.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부 가 설 명

-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2 회사는 아래의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장개시일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2.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아래의 질병

예시

· 개: 파보바이러스감염증,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감염 증, 전염성 간염, 아데노바이러스2형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 렙토스피라감염증, 필라리아감염증, 광견병, 인플루엔자 감염, 켄넬코프

- 3.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4.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5. 대상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교배,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6.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7. 미용으로 인한 비용
- 8.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9.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 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 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 10.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 방약, 의약부외품 등)
- 11.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 12.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샹품 값 포함) 및 귀세정제(이어클리너), 예방 가능한 기생충(벼룩, 젝켄, 모공충 등)의 제거비용 및 기생충으로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
- 13.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4. 왕진료,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5.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16.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 17.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18. 아포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Janus kinase inhibitor) 약물과 사이 토포인트(Cytopoint)
- 19. 첩모난생(속눈썹 질환) 및 눈물샘 치료(누루관시술 등) 등의 안검 외·내반 및 비루관 관련 질환으로 인한 비용
- ③ 제2항에서 정한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조치(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약 이름[무지개다리위로금]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무지개다리위로 금의 보장개시일(이하 무지개다리위로금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무지개다리위로금(강아지, 사망)으로 보험수익 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은 동물병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된 안락사를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무지개다리위로금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도성 특별약관 -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무지개다리위로금보장개시일은 이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5. 제4호 이외에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7.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손해,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손해(수의사의 소견 및 처방에 의한 경우도 동일)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
-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9.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10. 동물보호법 위반 등 동물학대에 기인하는 손해
- 11. 사망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는 실종. 행방불명 등

특약 이름[반려동물장례비용지원금]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동물장묘업체에서 제공하는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장례 당일 발생한총 장례비용을 제5항에 따라 반려동물장례비용지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

LID

- ② 제1항의 사망은 동물병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된 안락사를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동물장묘업체"라 함은 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에서 정하는 동물 장묘업자로써,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 해장시설,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영 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④ 제1항의 "장례서비스"라 함은 화장서비스, 장례서비스, 필수 장례용품 등을 말하며, 장례 이전 반려동물 사체 임시 안치, 한지·자개 등 기능성 유골함 및 수목함, 유골보석 제작, 봉안당(납골당) 안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5] 제1항의 반려동물장례비용지원금은 총 장례비용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5. 제4호 이외에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용항으로써 발생한 손해
- 7.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손해,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손해(수의사의 소견 및 처방에 의한 경우도 동일)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
-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9.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10. 동물보호법 위반 등 동물학대에 기인하는 손해
- 11. 사망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는 실종, 행방불명 등

특약 이름[반려동물장례비용지원금(20만원 초과)]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동물장묘업체에서 제공하는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장례 당일 발생한총 장례비용이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반려동물장례비용지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은 동물병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된 안락사를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동물장묘업체"라 함은 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에서 정하는 동물 장묘업자로써,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 해장시설,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영 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④ 제1항의 "장례서비스"라 함은 화장서비스, 장례서비스, 필수 장례용품 등을 말하며, 장례 이전 반려동물 사체 임시 안치, 한지·자개 등 기능성 유골함 및 수목함, 유골보석 제작, 봉안당(납골당) 안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핵연류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5. 제4호 이외에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7.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손해,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손해(수의사의 소견 및 처방에 의한 경우도 동일)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
-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9.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10. 동물보호법 위반 등 동물학대에 기인하는 손해
- 11. 사망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는 실종, 행방불명 등

특약 이름[반려동물장례비용지원금(50만원 초과)]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동물장묘업체에서 제공하는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장례 당일 발생한 총 장례비용이 5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반려동물장례비용지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은 동물병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된 안락사를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동물장묘업체"라 함은 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에서 정하는 동물 장묘업자로써,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 해장시설,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영 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④ 제1항의 "장례서비스"라 함은 화장서비스, 장례서비스, 필수 장례용품 등을 말하며, 장례 이전 반려동물 사체 임시 안치, 한지·자개 등 기능성 유골함 및 수목함, 유골보석 제작, 봉안당(납골당) 안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5. 제4호 이외에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7.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손해,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손해(수의사의 소견 및 처방에 의한 경우도 동일)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
-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9.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10. 동물보호법 위반 등 동물학대에 기인하는 손해
- 11. 사망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는 실종. 행방불명 등

특약 이름[반려동물장례비용지원금(70만원 초과)]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동물장묘업체에서 제공하는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장례 당일 발생한 총 장례비용이 7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반려동물장례비용지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은 동물병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된 안락사를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동물장묘업체"라 함은 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에서 정하는 동물 장묘업자로써,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 해장시설,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영 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④ 제1항의 "장례서비스"라 함은 화장서비스, 장례서비스, 필수 장례용품 등을 말하며, 장례 이전 반려동물 사체 임시 안치, 한지·자개 등 기능성 유골함 및 수목함, 유골보석 제작, 봉안당(납골당) 안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5. 제4호 이외에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7.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손해,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손해(수의사의 소견 및 처방에 의한 경우도 동일)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
-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9.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10. 동물보호법 위반 등 동물학대에 기인하는 손해
- 11. 사망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는 실종, 행방불명 등

특약 이름[반려동물배상책임]

제1조(목적)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 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 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 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반려동물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을 말하며, 이 계약에서 가입가능한 반려동물은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고 있는 개(犬)를 말합니다. 다만 아래에 기재된 개(犬)는 이 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보험가입 당시의 연령이 생후 60일 이하 또는 만 10세(120개월)을 초과하는 개(犬) 2. 판매점, 브리더 등이 매매(賣買)를 목적으로 사육관리 하는 개(犬) 3. 경찰견, 구조견, 군견, 사냥개 등 특수한 목적의 개(犬)(단, 맹도견, 청도견 등 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4. 투견, 경주견 등 흥행을 목적으로 사육관리 하는 개(犬) 5. 유기동물 보호센터 등에서 사육관리하는 개(犬)

2. 지급사유 및 보상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 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 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가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보상한도액	배상책임에 있어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 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보 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대한민국 내에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

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3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피해로 인한 배상책임
 - 2.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3.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5.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 6.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배상책임
 - 7. 피보험자의 불법행위 또는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1. 반려견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 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12. 가입동물의 소음, 냄새, 털날림으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 13. 가입동물이 질병을 전염시켜 발생한 배상책임
 - 1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맹견의 경우 동물보호법 제21조 제1항 2호에 따라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1. 제4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 2. 제4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의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특약 이름[반려동물 위탁비용(반려인 상해입원 1일이상 180 일한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기간 동안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을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발생한 위탁비용을 반려동물 위탁비용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수탁기관"이라 함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등록영업의 세부 범위)에서 정하는 동물위탁관리업자로써,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반려동물 위탁비용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한도로 하며 피 보험자의 입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④ 제1항의 반려동물 위탁비용은 위탁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반려동물 위탁비용은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 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따라 반려동물 위탁비용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 는 반려동물 위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5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반려동물 위탁비용은 반려동물 위탁 시 수탁기관에 지불한 비용을 말하며 추가 식대, 용품 구매 등의 비용은 제외한 기본 비용에 한합 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지급사유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

- 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